

# 2024년 3분기 비상기획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

##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
- 北, 쓰레기풍선 살포 피해지원 협조 요청(행안부 민방위과-2105, '24.6.11.)
  - 쓰레기풍선 살포로 피해발생함에 따라 입법 전까지 예비비 활용 신속 지원 협조 요청
- 市 감사위원회 컨설팅 실시 ('24.6.13. 민방위담당관 의뢰→'24.6.19. 감사담당관 회신)
  - (6.13. 의뢰) 피해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민방위기본법」, 「재난안전법」 취지를 근거로 적극적·선제적 피해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 (6.19. 원안통과) 공익 및 적극행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지원 타당성 인용 결정

## □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 2건, 79백만원

※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예비비를 배정 받아 집행함

- 세부사업명 : 북 쓰레기 풍선 피해지원 (1~2차)
  - '24.5월부터 北 쓰레기풍선 지속 살포로 인해 시민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상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대통령실 지시 및 행정안전부에서 예비비 등 자체예산을 활용한 신속한 피해지원 협조 요청함.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2105(2024.6.11.)호

- 市 감사위원회 적극행정을 통해 「민방위기본법」,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적극적·선제적 피해지원이 가능함을 인용 의결 받아, 피해접수, 피해조사반,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 방침서 수립 및 지원절차 시행함.

- '24.5~6월 피해 12건에 대하여 1차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4.6~8월 피해 23건에 대하여 2차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차량, 건물, 상해 등 총 35건 피해의 지원 타당성 심의 후 예비비를 지급함.
- 北 쓰레기풍선 피해에 대한 신속 복구 및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민피해를 지원하였음.

(단위:천원)

예산과목				지출액	지출일 (비고)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79,875,370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 세 확립	북 쓰레기풍선 피해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5,551,650	'24.08.09	제1차 12건 지원
				34,323,720	'24.09.30	제2차 23건 지원

※ 북, 쓰레기풍선 지속 살포됨에 따라 향후에도 입법 전까지 예비비사용이 예상됨.

붙임 : 1. 예비비 세부 내역 1부.

2. 근거 서류(행정안전부 공문) 및 피해지원 방침서 각 1부. 끝.

## □ 예비비 산출내역

### ○ (지원방법) 증빙자료에 의한 실비 지원

- 영수증, 견적서, 전문가 자문의견서,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 기준

## □ 제1차 북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

연번	일자	피해자	지역	대상	피해 내용	수리액	수리업체
5.28.-6.27.		서울특별시		차량 5건 / 건물 5건 / 물품 2건		45,551,650	
1	1차 5.28. ~30.	강봉주	영등포구	차량	· 메가트럭 5톤 탑차 · 워바디 탑 및 내부레일 등 파손	15,719,000	특장차업체
2		노강일	강서구	물품	· 에어컨 실외기 · 응축기 케이스, 판넬 등 파손	520,500	LG서비스센터
3	2차 6.1. ~8.	송원석	양천구	차량	· 기아 셀토스 차량 · 전면유리, 본넷트, 필러 등 파손	1,503,350	자동차정비소
4		정승현	서초구	건물	· 베란다 창문, 블라인드, 천장 파손	8,250,000	창호업체
5	3~4차 6.9. ~24.	장세근	동대문구	차량	· 기아 K5 차량 / 후면유리 파손	407,000	차유리업체
6		최슬기	서대문구	건물	· 테라스 유리천장 파손	650,000	유리업체
7		김용호	은평구	물품	· 건조대 파손	64,900	이마트 구매
8		박태완	성동구	건물	· 옥상 유리천장 파손	350,000	창호업체
9		장개나리	종랑구	건물	· 옥상 유리천장 파손	800,000	지붕보수업체
10		김종주	종로구	건물	· 지붕 파손 및 누수 발생	14,850,000	전문가 지문
11		최재우	동대문구	차량	· 아반떼 차량 · 운전석 루프 파손	200,000	롯데손해보험
12	5~7차 6.25.-27.	조진영	양천구	차량	· SM3 차량 · 루프 파손	2,236,900	자동차정비소

## □ 제2차 북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

연번	일자	피해자	지역	대상	피해 내용	수리액	수리
	6.27.~ 8.16.	서울특별시		차량 12건 / 건물 10건 / 상해 1건		34,323,720	
1	6.27.	손호성	강북구	차량	· 그랜저 차량 · 앞유리 및 블랙박스 파손	935,000	자동차 공업사
2	7.21.	최태섭	종로구	차량	· 소나타 LF 차량(개인택시) · 앞유리 파손	300,000	자동차유리업체
3	7.21.	김학균	송파구	차량	· 기아 K9파손 · 앞유리 및 블랙박스 등 파손	800,000	삼성화재
4	7.20.	김희태	종로구	건물	· 오피스텔 빗물방지 지붕 파손	1,400,000	창호업체
5	7.30.	이정문	서대문구	건물	· 유리지붕 캐노피 및 프레임 파손	1,150,000	지붕보수업체
6	7.21.	한길순	은평구	건물	· 지붕 기왓장 파손	150,000	지붕보수업체
7	7.23.	김흥식	구로구	건물	· 베란다 빗물받이 파손	350,000	지붕보수업체
8	7.23.	김찬주	노원구	차량	· 기아 봉고차 차량 · 앞유리 파손	287,870	자동차 정비소
9	7.24.	김상엽	노원구	차량	· 쉐보레 아베오 차량 · 풍선으로 인한 기왓장 낙하로 유리 및 프론트 웬더 파손	1,600,330	자동차 정비소
10	7.24.	이화자	중구	건물	· 슬레이트 지붕 구멍 및 크랙 발생	11,367,000	지붕보수업체
11	7.24.	김효원	동작구	건물	· 옥상 기왓장 파손	880,000	지붕보수업체
12	7.24.	성부경	성동구	차량	· 쏘렌토 차량(판매용 중고차량) · 앞유리, 본넷 등 파손 · 중고차 감가액(300만원) 지원 요청 → 간접적인 피해로 해당 금액 제외	4,245,120	자동차 정비소
13	7.24.	문관수	구로구	차량	· 오피러스 차량 · 외부프레임, 루프 파손	450,000	DB손해보험
14	7.24.	이혜미	강서구	차량	· 현대 투산 차량 · 주유구 뒤쪽 파손, 판금 교정 등	200,000	흥국화재
15	7.24.	신용달	도봉구	건물	· 3층 건물 기와 파손	350,000	지붕보수업체
16	7.24.	한순희	노원구	차량	· BMW 630 차량 · 루프 파손 및 복원	1,000,000	자동차 정비소
17	7.24.	김의경	강서구	상해	· 오른쪽 팔 타박상 및 어깨관절 염좌치료	468,400	정형외과
18	7.24.	신인식	마포구	건물	· 베란다 유리창 파손	605,000	지붕보수업체
19	7.24.	안태화	노원구	차량	· 기아 K5 차량 · 앞유리 파손	280,000	자동차 정비소

연 번	일자	피해자	지역	대상	피해 내용	수리액	수리
20	7.24.	<b>박용호</b>	노원구	차량	· 기아 카니발 차량 · 보조석 문 및 유리 파손	715,000	자동차 정비소
21	7.24.	<b>김제민</b>	동작구	차량	· 카니발 리무진 차량 · 앞유리 파손	900,000	자동차 정비소
22	7.24.	<b>이기수</b>	영등포구	건물	· 슬레이트 지붕 파손 및 · 빗물로 인한 벽지 손상	3,745,000	지붕보수업체
23	8.16.	<b>최종국</b>	동대문구	건물	· 계단 아크릴창 파손	2,145,000	지붕보수업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행정안전부

##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北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협조 요청

1. '24.5.28.(화) ~ 6.10.(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서울·경기지역에서 차량 유리 및 주택 지붕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현재 현행법으로는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금일(6.11.) 국무회의를 통해 피해 지원과 관련 안건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습니다.

### <보고안건>

- 北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부재
- 여·야(與·野) 모두 동(同) 사례와 유사한 피해의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 추진중
- 민방위기본법 개정 전이라도 적극 행정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
- 오물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체 예비비를 활용하여 금년 상반기(6월말)까지 신속한 피해지원

3.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에 대해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끝.

##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민방위담당관),경기도지사(사회재난과장)

주무관 안영송 과 학기 술 서 민방위과 과 전결 2024. 6. 11.  
기관 전병훈 장 장규식

협조자

시행 민방위과-2105 (2024. 6. 11.) 접수 민방위담당관-9651 (2024. 6. 11.)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3호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4367 /전송 044-205-8906 / [ays130@korea.kr](mailto:ays130@korea.kr) / 비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행정1부시장
				06/24
협 조				
주무관 주무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0324
결재일자	2024.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26호

## 北,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지원계획

2024. 6. 21. (금)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b>1. 일반사항</b>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b>2. 약자와의 동행</b>				
목 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 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北,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서울시 피해지원계획

'24. 6. 21.(금) | 민방위담당관 류대창☎2133-4505 비상기획팀장: 이민제☎4507 담당: 전현아·주아람·신채연☎4509

'24.5월~6월 北, 오물풍선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하여 별도 지원 규정 제정 이전, 서울시 차원 신속하게 피해지원을 처리하기 위함

## I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24.5월~6월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서울시 내 피해

□ 지원근거

- 北,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협조 요청(행안부 민방위과-2105, '24.6.11.)
  -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 발생 시, 입법 전까지 예비비를 활용한 지원지원 논의
  - 북 오물 풍선 피해사항만 적용하여 신속 지원 요청
- 감사위원회 컨설팅 결과(감사담당관-10231,'24.6.19. / 6.13. 의퇴 → 6.19.원안 통과)
  -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지원 가능하나, 「민방위기본법」,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적극적·선제적 피해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지원경위

- '24.5.28.~6.20. : 北 오물풍선 살포(총 347개)
  - (1차) 5.28.~30. / (2차) 6.1.~8. / (3차) 6.8.~9. / (4차) 6.9.~20.
- '24.6.4.~6.5. : (대통령실) 오물풍선 피해자 지원 방안 지시  
(국 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발의
- '24.6.10. : 행안부 '신속 지원' 발표 및 서울시 등 지자체 협의
  - (사전) 지자체 자체 예비비 사용 / (사후)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검토
- '24.6.13. :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의뢰
  - 6. 19.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지원방안' 을 '적극 행정 사례' 에 해당하여 인용 의결

□ **지원방법 : 소규모 피해로 신속한 실비 지원 추진**

- '24.5월~6월 오물풍선 피해는 인명·대규모 시설 피해가 없는 **소규모 피해**
- 직접적 피해에 대하여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한 **실비 지원 실시**
  - 사망 및 대규모 피해에 대하여 지원기준에 대한 입법 추진중에 있음
  - 피해 접수 현황 : 6.20. 기준, 10건 접수 / 차량·지붕 파손 등 ※붙임2 참고
- **추후피해 발생시**
  - (소규모 피해) 실비지원 / (대규모 피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요율에 따라 지원

**국회 입법 동향에 따른 행정안전부 조치**

□ **국회 입법 동향** ※붙임8 참고

- 민방위기본법 내 “적 살포에 의한 피해 조치 지원규정 신설”

발의의원	정 당	신설 조항	주요 내용
모 경 종 등 12인	더불어 민주당	제32조3 (민방위사태 피해의 지원) 신설	-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살포의 경우 조치할 수 있다. - 지원기준·절차·금액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 만 희 등 72인	국민의 힘	제32조2 (수습 및 복구)의 단서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 살포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다 - 5.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 **행정안전부 조치**

- 국회입법과정 적극 지원 예정

## II 지원 절차



### III 세부 추진계획

#### 1. 지원 방법

□ 지원대상 : '24.5월~6월 오물풍선 살포에 의한 서울시 내 피해

○ 인명, 차량 피해 주민등록 소재지 지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9호 준용)

지원대상	지원주체		비고
	피해발생지	주민등록지	
인명 피해		○	
차량 피해		○	
건물/물품 피해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9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별표] 생활안전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실시요령 피해가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피해조사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총괄 지급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명피해 및 그와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군·구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체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4.7.10.(수)까지 접수 ※ 서류보완 기간 : 7.11.(목) ~ 17.(수)

- 신문, 방송등 보도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누리집 등 활용 안내

- 지침수립 전, 유선접수 된 시민에게는 개별 안내(10건) ※붙임2참고

○ 신청서류 : 피해조사 신고서, 현장사진, 증빙자료 ※붙임5참고

○ 신청방식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사진 및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지원방법 : 증빙자료에 의한 실비 지원 ※ 과도 청구 시, 조사심의 후 지급

대상	지원기준	비고
인명피해	- 진료비, 약제비 등 증빙자료	
차량 피해	보험처리 - 자기부담금 처리내역	
	보험 미처리 - 견적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건물/물품 피해	- 견적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 대규모(기타) 피해 발생 시, 「자연재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준용

➔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예비비 지출

## 2. 피해조사반 운영

- **조사기간** : 7월 중(지원심의위원회 시행 전)
- **조사반** : 민방위담당관 직원 자체 조사(2인 1조 운영)
- **조사내용**

구분	산정	협조	비고
서면	① 신고접수내역 확인	군·경찰·소방	공문
	② 보험 접수 내역 확인	관련 보험사	
	③ 피해 및 복구액의 적정성 판단	자체 조사반	증빙자료 참고
현장	- 증빙자료와 현장 비교 - 견적가 적정성 및 수리진위여부 확인 - 사실확인 조사서 작성	자체 조사반	붙임6 참고

### □ 조사결과

-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시, 객관적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

## 3.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설치** : 오물풍선 살포 등 北 살포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손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구성** : 위원장 1명(비상기획관)을 포함한 6명~9명 범위
  - 위원
    - ┌ 내부 : 비상·재난 및 감사, 예산 등 관련 과장급 공무원
    - └ 외부 : (필요시) 감정평가·손해사정사, 재난·재해 법률 전문가 등
  - 피해 규모·성격에 따라 위원을 탄력 선발하여 운영
  - 피해사항이 경미하여 확인서류를 영수증 또는 견적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위원회 개최할 수 있음(필요시 서면 심의도 가능)

## □ 지원심의위원회 역할

- 지원 지급액 타당성 검토(증빙서류 및 조사금액 참고)
- 지원 지급액 결정 및 조정
  - 영수증 금액이 타당할 경우 지급액 확정,
  - 견적 금액 등 과도할 경우 조사반 조사금액 참고하여 금액 조정

### '24.5~6월 접수에 대한 위원회 구성(안)

연번	구분	현 소속	비고
1	위원장	비상기획관	
2	내부위원	민방위담당관	
3	내부위원	감사담당관	
4	내부위원	재난안전정책과장	
5	내부위원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6	내부위원	예산담당관	
8	외부위원	재난·재해관련법 전문가	필요시
9	외부위원	감정평가사	
10	외부위원	손해사정사	

※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근거하여 지급

## VI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 행정사항

- 예비비 절차에 따른 예산담당관 협조 ※붙임7 참고
- 피해사실 조사신고서 접수 및 사실 확인 (→군·경찰·소방)

### □ 향후일정

- 신고 접수 완료(서류보완 : 접수마감일부터 7일이내) : 7월10일까지
- 피해 조사반 운영 : 7월19일까지
-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7월26일까지
- 예비비 지출 요구서 제출(→ 예산담당관) : 7월31일까지
- 지원금 지급(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 : 8월09일까지

- 붙임 1. 北 오물풍선 피해지원민원 전화접수 매뉴얼
2. 유선 접수된 신고내역(10건)
  3. 입법 추진에 따른 지원 방안(안)
  4. 유사 피해 사건별 지원사례
  5. 피해사실 조사신고서(피해자)
  6. 사실확인 조사서(조사자)
  7. 예비비 사용절차
  8. 민방위기본법 발의안(2건)

문서번호		시 민			
결재일자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협 조 주무관			

## 北, 쓰레기풍선 살포에 따른 추가 피해지원계획

2024. 7. 30. (화)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b>1. 일반사항</b>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b>2. 약자와의 동행</b>				
목 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 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北, 쓰레기풍선 살포에 따른 추가 피해지원계획

'24. 7. 30.(화) | 민방위담당관: 류대창☎2133-4505 비상기획팀장: 이민제☎4507 담당: 전현아·주아람☎4509

'24.5월~6월 北 쓰레기풍선으로 인한 피해 지원 이후에도 지속된 北 도발이 발생되기에 별도 지원규정 제정 전까지 지속적·체계적 피해지원을 하기 위함

※ 일회성 사건 지원이 아닌 지속적 월단위 피해지원 방안 마련

## I 지원 개요

※ 당초 오물풍선에서 쓰레기풍선으로 용어 통일됨

### □ 지원근거

- 北,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협조 요청(행안부 민방위과-2105, '24.6.11.)
  - 쓰레기풍선 살포로 피해 발생 시, 입법 전까지 예비비를 활용한 지원지원 논의
  - 북 쓰레기풍선 피해사항만 적용하여 신속 지원 요청
- 감사위원회 컨설팅 결과(감사담당관-10231, '24.6.19. / 6.13. 의뢰 → 6.19.원안 통과)
- 北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지원계획(민방위담당관-10324, '24.6.24.)
  - 기존 방침과 변경 방침 차이점

구분	기존	변경
지원방식	사건별 지원	→ 월단위 지원
지원대상	'24.7.10.까지 접수된 쓰레기 풍선 1~7차 피해 건	→ '24.7.10. 이후 접수된 월단위 쓰레기풍선 피해 건
신청방식	이메일, 방문 접수	→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조사방식	모든 피해 현장조사	→ 필요시 현장조사
위원회 구성 (내부위원)	비상·재난 및 감사, 예산 등 관련 과장급 공무원	→ 관련업무, 비상·재난 및 기술심사 등 과장급 공무원
지급일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내	→ 접수마감일로부터 45일 내

## □ 지원경위

- '24.6.5. : (대통령실) 쓰레기풍선 피해자 지원 방안 지시
- '24.6.10. : 행안부 '신속 지원' 발표 및 서울시 등 지자체 협의
  - (사전) 지자체 자체 예비비 사용 / (사후)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검토
- '24.6.13. :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의뢰
  - 6. 19.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지원방안' 을 '적극 행정 사례' 에 해당하여 인용 의결
- '24.6.24. : 北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지원계획 수립(민방위담당관-10324)
  - 7.10.(수) 접수 마감(총 12건 접수, 8월 초 지원금 지급 예정)

## □ 지원방법 : 체계적이고 신속한 실비 지원 추진

-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됨에 따라 체계적·지속적인 지원 추가
- 차량·건물 파손, 장애·사망을 제외한 인적피해 등 직접적 피해 실비지원
- 별도의 지원법령 마련 전까지 서울시 내 발생한 사건 지원

구분	피해접수 건	쓰레기풍선 살포 회차
1차 지원계획에 따른 7.10.까지의 접수 건	12건	· 1~7차 피해
7.10. 이후 추가 건	26건	· 5차~7차 피해1건, · 9차 피해 6건 · 10차 피해 19건

※ 법령 개정 전, 사망 및 장애의 인적 피해 발생 시 「민방위기본법」 또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관련 보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 지급 방법 검토

## 국회 입법 동향 및 쓰레기풍선 살포현황

### □ 민방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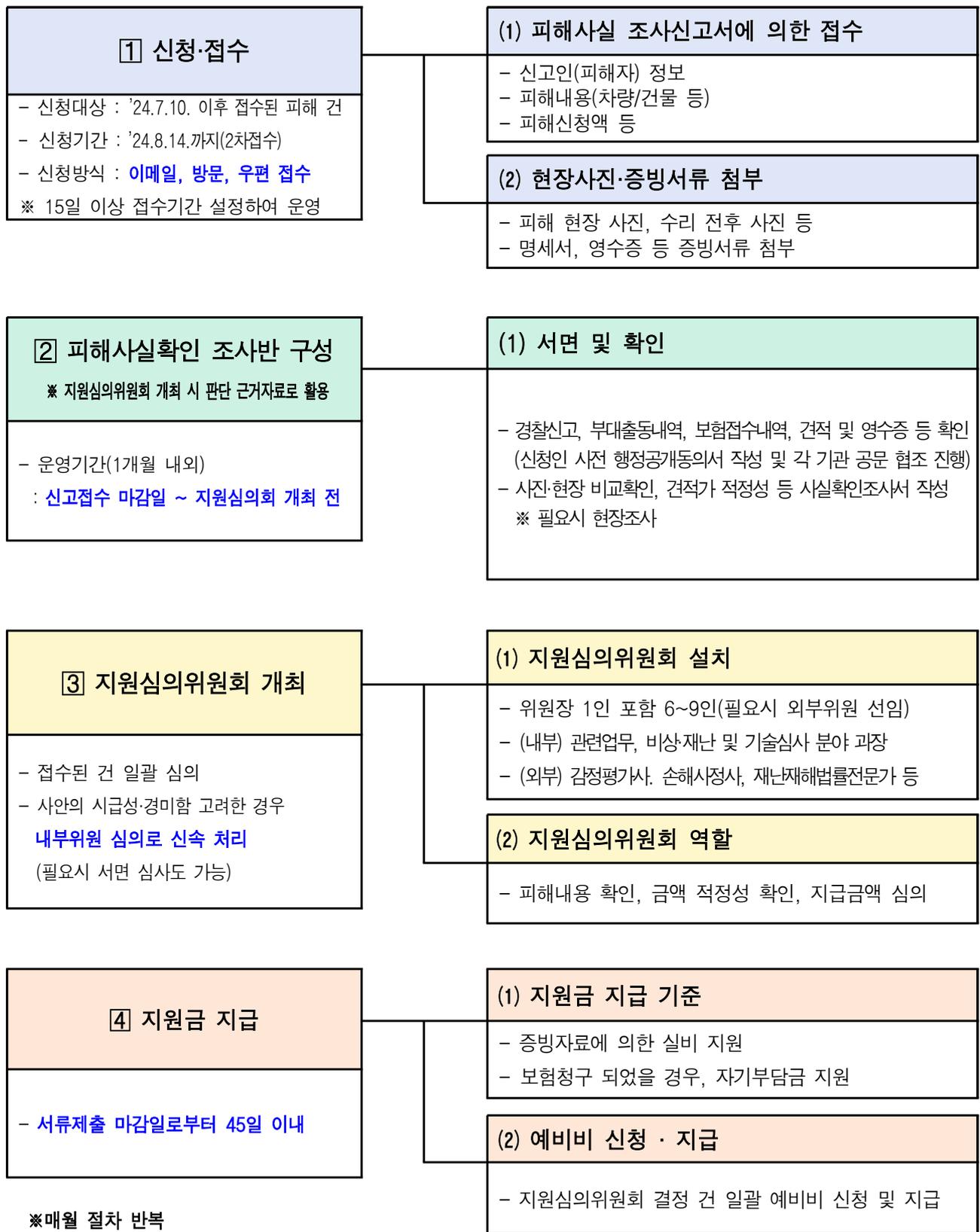
- 행정안전부 조치 : 국회입법과정 적극 지원 예정

발의의원	정 당	신설 조항	주요 내용
모 경 중 등 12인	더불어 민주당	「민방위기본법」 제32조3(민방위사태 피해의 지원) 신설	-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살포의 경우 조치할 수 있다. - 지원기준·절차·금액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 만 희 등 72인	국민의 힘	「민방위기본법」 제32조2(수습 및 복구)의 단서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 살포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다 - 5.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유 동 수 등 15인	더불어 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정의) 제1호니목 개정	- 사회재난의 정의 : 총돌,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도발·위협 등으로 인한 피해
민 형 배 등 10인	더불어 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정의) 제1호니목 개정	- 사회재난의 정의 : 총돌, 「통합방위법」에 따른 침투·도발이나 위협 등으로 인한 피해
정 을 호 등 12인	더불어 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정의) 제1호니목 개정 제65조의 3 신설	- 사회재난의 정의 : 총돌,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 등으로 인한 피해 - 특별복구비 등 지원 특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 중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특별 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쓰레기풍선 살포현황

- '24.5.28.~6.9. : 北 쓰레기풍선 살포(1~4차, 총 349개)
  - (1차) 5.28.~30. / (2차) 6.1.~8. / (3차) 6.8.~9. / (4차) 6.9.
- '24.6.24.~6.26. : 北 쓰레기풍선 살포(5~7차, 총 268개)
  - (5차) 6.24.~25. / (6차) 6.25.~26. / (7차) 6.26.~27.
- '24.7.18.~7.25. : 北 쓰레기풍선 살포(8~10차, 총 379개)
  - (8차) 7.18. / (9차) 7.21.~22. / (10차) 7.24.~25.

## II 지원 절차



※매월 절차 반복

### III 세부 추진계획

#### 1. 지원 방법

##### □ 지원대상 : '24.7.10.(수) 이후 접수된 피해 건

- 인명, 차량 피해 주민등록 소재지 지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9호 준용)

지원대상	지원주체		비고
	피해발생지	주소등록지	
인명 피해		○	
차량 피해		○	
건물/물품 피해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9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별표] 생활안전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실시요령 **피해가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피해조사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총괄 지급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명피해 및 그와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군·구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체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 □ 지원신청

- 신청기간(2차접수) : '24.8.23.까지 ※ 서류보완 기간 :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
  - 신문, 방송등 보도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누리집 등 활용 안내
- 신청서류 : 피해조사 신고서, 현장사진, 증빙자료 ※붙임2참고
- 신청방식 :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 지원방법 : 증빙자료에 의한 **실비 지원** ※ 과도 청구 시, 조사심의 후 지급

대상	지원기준	비고
인명피해	- 진료비, 약제비 등 증빙자료	
차량 피해	보험처리 - 자기부담금 처리내역	정식 공업사에서 수리 안내 (견적 상이성 방지)
	보험 미처리 - 견적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건물/ 물품 피해	- 견적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 대규모(기타) 피해 발생 시, 「자연재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준용

➔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예비비 지출**

## 2. 피해조사반 운영

- 조사기간** : 지원심의위원회 시행 전
- 조사반** : 민방위담당관 직원 자체 조사(2인 1조 운영)
  - 사실확인조사서 작성 ※붙임3 참고
- 조사내용** ※필요시 현장조사

구분	협조	확인 내용	비고
서면	군·경찰·소방	신고 및 출동내역	공문
	병원·카센터·보험사, 판매업체 등	치료, 수리, 구매 등 처리 및 영수 내역(견적가 적정성 등)	
현장	사건 현장 방문	증빙자료와 현장 비교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건물·차량 파손 및 부상 등 파손 인과성 유무	

### 조사결과

-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시, 객관적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

## 3.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설 치 : 쓰레기풍선 살포 등 北 살포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구 성 : 위원장 1명(비상기획관)을 포함한 6명~9명 범위
  - 위원
    - 내부 : 관련업무, 비상·재난 및 기술심사 등 과장급 공무원
    - 외부 : (필요시) 감정평가·손해사정사, 재난·재해 법률 전문가 등
  - 피해 규모·성격에 따라 위원을 탄력 선발하여 운영
  - 피해사항이 경미하여 확인서류를 영수증 또는 견적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위원회 개최할 수 있음(필요시 서면 심의 가능)

## □ 지원심의위원회 역할

- 지원 지급액 타당성 검토(증빙서류 및 조사금액 참고)
- 지원 지급액 결정 및 조정
  - 영수증 금액이 타당할 경우 지급액 확정
  - 견적 금액 등 과도할 경우 조사반과 피해자 금액 조정

### 위원회 구성(안)

연번	구분	현 소속	비 고
1	위원장	비상기획관	
2	내부위원	민방위담당관	
3	내부위원	자치행정과장	
4	내부위원	재난안전정책과장	
5	내부위원	평화기반조성과장	
6	내부위원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대응팀장	
7	외부위원	재난·재해관련법 전문가	필요시
8	외부위원	감정평가사	
9	외부위원	손해사정사	

※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근거하여 지급

## IV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 행정사항

- 예비비 절차에 따른 예산담당관 협조
- 피해사실 조사신고서 접수 및 사실 확인 (→군·경찰·소방)

### □ 향후일정(2차 접수 관련)

- 신고 접수 : 8월 23일까지
  - ※ 서류보완 :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이내
- 피해 조사반 운영 : 위원회 개최 전까지
-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9월 중
- 지원금 지급(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45일이내) 9월 중

- 붙임 1. 추가 피해신고내역 1부.
2. 피해사실 조사신고서(피해자) 1부.
  3. 사실확인 조사서(조사자) 1부.
  4. 일부개정 법률 발의안(5건) 1부. 끝.